

관 변 경 (案)

현 행	변 경 (안)	비 고
<p>제2조(목적)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~28. (생 략)</p> <p>29. 위 각항의 부대사업 및 국내외 투자</p>	<p>제2조(목적)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1.~28. (현행과 동일)</p> <p>29. 경영컨설팅업</p> <p>30. 위 각항의 부대사업 및 국내외 투자</p>	사업목적 추가
<p>제9조(신주인수권)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</p> <p>1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일 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2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</p> <p>3.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 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4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 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5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 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 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 <p>6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 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	<p>제9조(주식의 발행 및 배정) ①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(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)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.</p> <p>1.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</p> <p>2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</p> <p>3.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 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 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 를 배정하는 방식</p> <p>②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.</p> <p>1.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</p> <p>2.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 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</p> <p>3.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</p> <p>4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</p>	자본시장법 개정 사항 반영

현 행	변 경 (안)	비 고
<p>③제2항에 따라 주주의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액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⑤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	<p>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 <u>다만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.</p>	
<p>제9조의2(주식매수선택권) ①회사는 임·직원(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·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~ ⑤ (생 략)</p> <p>⑥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, 각 해당 주주총회 또는 해당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행사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의2(주식매수선택권) ①회사는 임·직원(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·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임직원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동일)</p> <p>⑥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.</p> <p>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.</p>	<p>상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</p>

현행	변경(안)	비고
<p>⑦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당해 임·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. 당해 임·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.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	<p>⑧ (현행과 동일)</p> <p>⑨ (현행과 동일)</p>	
<p><u>제13조의2(전환사채의 발행)</u>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	<p><u>제13조의2(전환사채의 발행)</u> 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.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의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<p>②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.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	<p>자본시장법 개정 사항 반영</p>

현행	변경(안)	비고
<p>②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1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, 100억원은 제7조의2의 종류주식으로 하고,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총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</p> <p>④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전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④ (현행과 동일)</p> <p>⑤ (현행과 동일)</p> <p>⑥ (현행과 동일)</p>	
<p>제14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) 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.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의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<p>②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.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	<p>자본시장법 개정 사항 반영</p>

현행	변경(안)	비고
<p>②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</p> <p>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1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, 100억원은 제7조의2의 종류주식으로 하고, 그 발행가액은 액면총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</p> <p>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.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⑤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3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</p> <p>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④ (현행과 동일)</p> <p>⑤ (현행과 동일)</p> <p>⑥ (현행과 동일)</p>	
<p>제29조(이사 및 감사의 선임) ①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결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②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<u>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,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u></p> <p>③이사 선임시 상법 제382조의2의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.</p>	<p>제29조(이사 및 감사의 선임) 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----- ----- -----<u>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동일)</p>	자구수정
	<p>부 칙 (2014. 3. 21) 이 정관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</p>	